



# 포장용기 리사이클 법 개정

## Review of Packaging Recycling Law of Japan

小澤 充也 / 대일본인쇄(주) 포장사업부 제1기술센터

### 1. 최대 논점 EPR론

용기리사이클법의 재평가는 산업구조심의회와 중앙환경심의회에서 1년 반에 걸쳐 각 40회의 회의에서의 격렬한 논의를 거쳐서 2006년 1월 23일 합동석상에서 실질적으로 집계되었다.

그 후 양심회의의 최종 집계에 근거하여 법안이 작성, 3월 1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들의 요점을 소개하고 문제점이나 금후 과제에 관하여 서술해본다.

최대의 쟁점은 지자체와 사업자의 역할분담이었으며 시민운동가, 학자, 지자체들은 EPR(확대생산자책임)론에 의거 사업자가 분별수집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사업자는 제안된 제도변경으로는 환경부하, 사회코스트 절감의 효과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에 의거 지적하며 지자체, 사업자, 소비자, 3주체가 상호연대 각각의 역할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집계나

법안도 그에 따른 것으로 되었으며 양측의 논의를 [그림1]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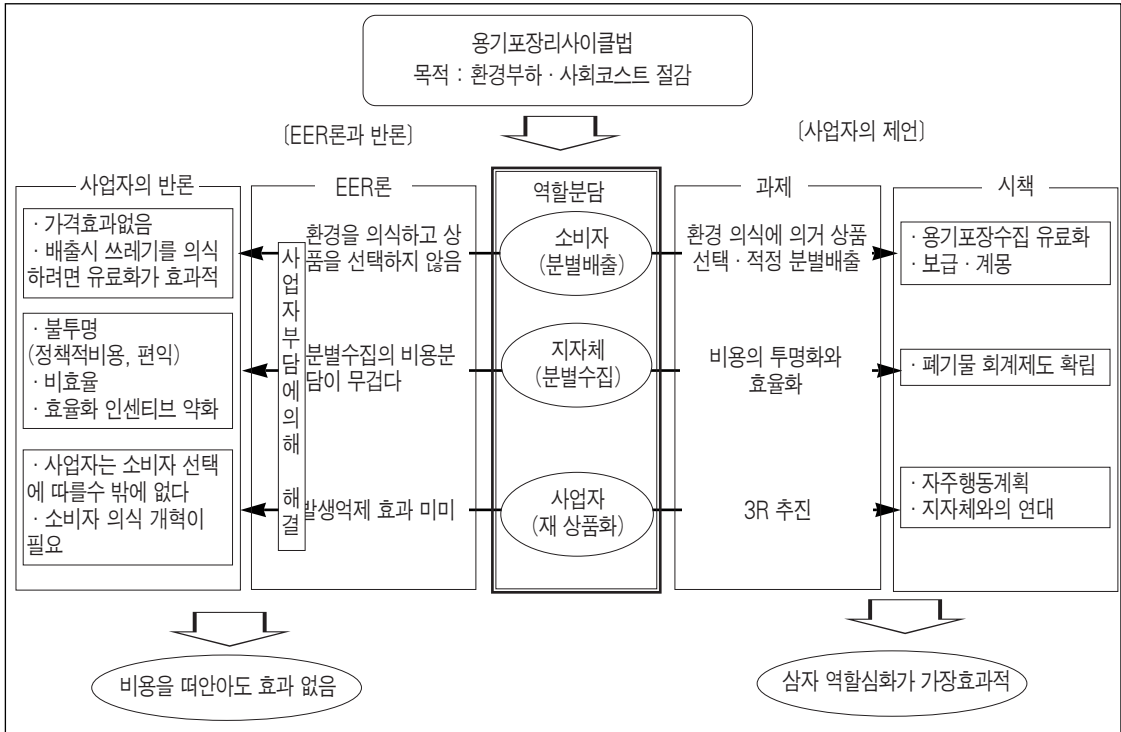
### 2. 법안에 채용된 성과 배분제도

연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성과분배제도가 채용되었다.

지자체는 분별수집 할 용기포장의 질적 향상에 힘을 쓰고, 사업자는 수거한 용기포장의 재생품화 방법의 고도화에 힘써 그 결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생품화 비용이 절감되었을 경우에는 그 성과를 양자가 반절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는 비용 절감분의 50%를 지자체에 거출한다고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지불되는 거출금은 분별수집의 효율화에 사용되는 것이며, 덧붙여서 유상지정을 받고 있는 스틸 캔, 알루미늄 캔, 음료용 종이팩, 골판지는 재생품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과배분제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성과 배분을 3주체의 역할수행의 철저히함과 관련지으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그림 1] 용기포장리사이클링법 재평가 논의



### 3. 제도 설계에 관한 과제

상세한 제도 설계는 법률에 의거 정부 법령으로 결정한다. 배분의 대상으로 되는 성과는 재상품화 비용의 예측과 실적의 차액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상품화 할 수량과 단가의 예측이며, 그 둘은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의 분별수집 계획은 지자체의 의욕, 독자처리, 예산 획득 등의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측치의 기초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역시 용기리사이클협회의 수거량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단가는 용기리사이클협회에 지불하는 재상품

화 위탁단가가 되나, 많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는 초년도의 단가로 고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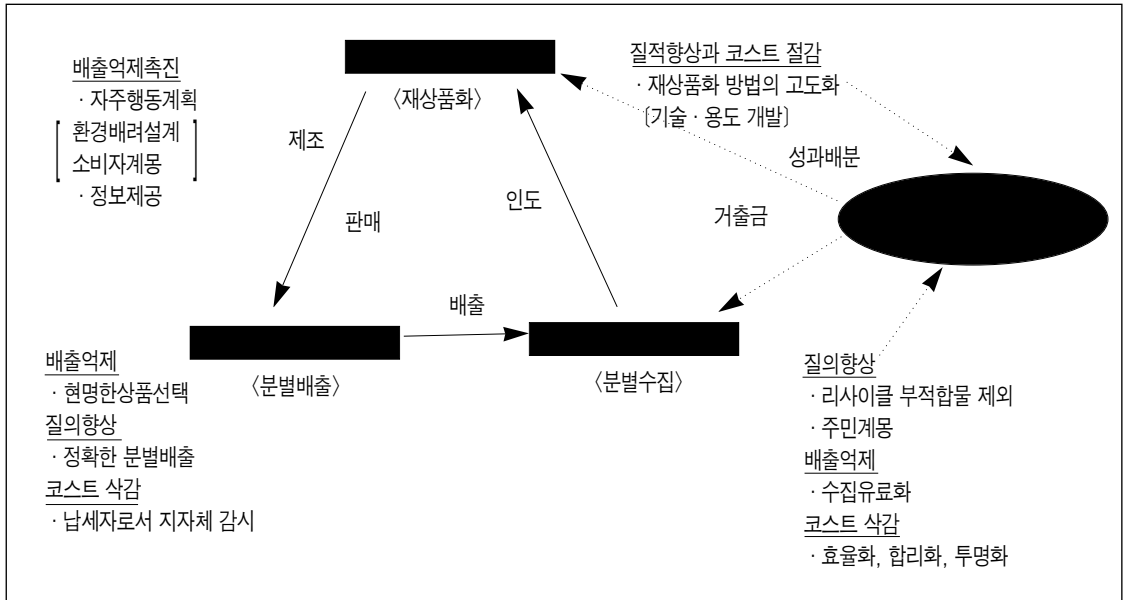
다른 포인트는 예측과 실적의 평가간격이다.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예측치를 기준년도의 실적치에 리셋트 되겠지만 심의회에서 정부는 3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용기리사이클법의 운용은 단년도 주의이므로 그것과의 정합성이 과제이다.

### 4. 기타 논점

1) 역할분담이외의 논점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 열회수(써멀리커버리)에 관해서 산업구



[그림 2]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의 정부개정안과 산업구조심의회, 중앙환경심의회 의 최종안



조심의회는 「보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환경심의회는 「긴급비난적」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소극적이다.

2) 일회용 봉지의 유료화에 관해서는 나라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사업자가 배출 억제 추진을 위한 자주적 연구를 하게 된다.

3) 지자체에 대한 용기포장 수집의 유료화는 산업구조심의회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환경심의회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탁하는 뉘앙스이다.

4) 사업자나 지자체의 자주적 연구 강화도 요구되어진다.

특히 사업자는 각 주체의 역할심화와 주체간의 연대 중요성을 주장한 것도 있어서 자주 행동 계획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법안은 배출 억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서 주무장관이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일정량 이상의 용기포장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연구 상황 보고를 받아 불충분한 경우는 권고, 공포, 명령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 이 규정은 소매업 등에게 적용되며 용기나 내용물 메이커에 대해서는 자원효율이용촉진법을 적용하여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또, 소비자 계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소비자가 상품선택을 통하여 용기포장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종 집계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으나 정부는 구체적 시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법

안 중에는 용기포장 폐기물 배출 억제 추진위원을 위촉하여 소비자의 지도, 조연 등을 하는 시스템이 규정되었다.

6) 기타, 사업계 용기포장을 대상 외로 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면제, 리터너블 용기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 디포지트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자주회수 인정을 요건을 완화, 종이제 용기포장은 안정될 때까지 유상지정하지 않는 등 현상 유지토록 한다.

## 5. 국회심의와 차기 재평가

금후의 움직임이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심의된다. 시민운동가가 있어서 그 내용은 대단히 불만으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EPR을 채용하라고 하는 결의

실현을 할 것이다.

차기 재평가는 5년 후가 될 것이나, 금회는 공방 쌍방 모두 스스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재판에서의 증거책임과 마찬가지로, 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측이 효과를 증명할 수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효과의 증명 없이 사업자 부담이 옳다고 주장하는 EPR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은 5년 후 사업자 책임 확대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한편 사업자측도 반론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정비 할 것이다.

쌍방의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며, 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저절로 합의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